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를 위하여『민법』에 위반되는 규정은 삭제하고, 시설사용료 지역민 감면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휴관일 신설(안 제5조)

○ 체육시설 사용료 정비(안 제10조, 별표 1)

○ 관람권 징수금액에 대한 현실화(안 제11조)

○ 체육시설 이용사용자에 대한 초과사용료 삭제(안 제12조)

○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변경(안 제13조, 별표 2)

○ 시설 사용 시,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조항 추가 및 『민법』에 위반 소지 규정 삭제(안 제16조)

○ 관람권 잔표 와 회수된 관람권 폐기절차 규정(안 제23조)

○ 프로그램 운영 신설(안 제25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6조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〔기획감사실-5902(2018. 8. 8.)〕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44052(2018. 8. 8.)〕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8.30. ~ 9.19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우리군 공공체육시설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써

○ 명절 당일 휴관일 신설, 체육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 현실화, 사용료 감면대상 및 요율 세분화, 시설 사용자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민법과 상충되는 내용의 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과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